

## 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85호

###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2월 1일

### 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 : 2022. 12. 1.~12. 15.(15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1	황*익	1968. 9. 28.	0178200274100006571	₩8,602,200	경기도 군포시 번영로
2	신명종합건설(주)	110111-0420***	0178200274100006447	₩42,480,000	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77길
3	김*수	1976. 11. 2.	0178210274100003563	₩4,312,500	경기도 광주시 고불로
4	윤*숙	1974. 2. 12.	0178220274100002648	₩1,699,500	충청남도 서산시 진장3길
5	이*영	1955. 2. 11.	0178200274100004346	₩19,177,200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
6	김*민	1958. 11. 16.	0178200274100001900	₩7,965,000	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 시장1길
7	이*우	1980. 12. 15.	0178200274100003963	₩1,062,000	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일로 1길
8	정*호	1966. 7. 23.	0178200274100001915	₩9,558,000	경기도 의정부시 서광로
9	선*석	1986. 5. 28.	0178200274100005627 0178200274100000501	₩3,245,200 ₩125,000	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
10	(유)티유비스타	110114-0142***	0178200274100011076	₩13,275,000	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
11	주식회사 제이오스	110111-5542***	0178200274100005389	₩6,637,500	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
12	조*호	1969. 2. 23.	0178200274100006534 0178200274100000470	₩3,936,600 ₩243,000	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0로
13	감*순	1969. 10. 23.	0178200274100004998	₩6,372,000	경기도 김포시 풍년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14	유*진	1963. 7. 21.	0178200274100006216	₩3,458,620	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

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한국방송회관 11층,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납부를 위한 고지서 및 독촉장이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